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5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아동·청소년건강검진 추가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위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아동·청소년건강검진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아동·청소년건강검진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건강검진) ① (생략)	제52조(건강검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아동·청소년건강검진: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2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대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¹⁾. 아동·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검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3.26.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024.9.27. 시행예정)⁴⁾.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9. 27.] 제11조의2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현황 >

구분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건강 검사	청소년 건강진단	학교밖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
검진 대상	영유아 (만0~6세)	초 · 중 · 고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만9~18세)	지역세대주(만 19세 이상) 직장가입자(만 19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법률	모자보건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024.9.27.] 시행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시행	국가/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위탁)	학교장	국가/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위탁)	국가/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보험공단
정보 관리	건강보험공단	학교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 그러나 이와 같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학교의 장이 실시·관리하고 있는 학생건강검사의 경우 검진 결과를 기록한 학생건강기록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타 검진정보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⁵⁾.

**<감사원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2018. 11.) 중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분야 관련 주요내용>**

<문제점>

- 학생건강검진은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동일한데도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실시·관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생애주기별[유아기→(청소년기)→성년기] 검진정보의 연계 관리가 미흡

<개선방안>

- 학생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검진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자료 : 감사원,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2018.11)

5) 감사원,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2018.11

□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실효적인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학생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교육부 추계: 2024년 기준 약 465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매년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자금운용의 여력이 큰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⁶⁾ 건강검진 지출액이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개정(2024.3.26.)에서 건강진단 실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경우에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보험급여

7)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서 충당하고 있으나(법 제108조의2제4항제1호), 최근 검진 증가 등에 따라 건강검진 지출액이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상황임(2023년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1조 8,208억원 대비 건강검진 사업비 2조 537억 원이 지출됨에 따라 2,329억원 초과 지출됨)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진 및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예지위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74호)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다.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으로 이관될 경우, 건강검진 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학생건강검진에 소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건강보험 지원 근거 추가 등 재원조달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 학생건강검진은 타 국가건강검진과 달리 학교장이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도 학교에서 별도 관리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결과와 연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학교에서는 매년 검진기관 선정·계약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

하는 바, 학생건강검진을 이관하여 검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검진결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